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4. 22.(화) 10:00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O 발의일자: 2025년 4월 11일

O 회부일자: 202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2023.9.27.)· 시행(2024.3.28.)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 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O 인용법령 조문 변경 및 명확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6호)
-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관련 혼재된 인용법령 및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제3호)
-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 업무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제1항)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교육활동 침해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법률지원단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안 제14조제2항제4호)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 시행)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였음
- 한편, 본 조례 제9조제1항제3호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2조제4호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조례 제8조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교권침해 행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분리조치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유아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은 생활지도로써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와는 성격 및 근거법, 절차 등이 다른 별도의 제도이나 혼용되어 있음
- 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혼재된 인용법령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6호는 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을 반영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O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분리조치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유아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은 생활지도로써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와는 성격 및 근거법, 절차 등이 다른 별도의 제도이나 혼용되어 있음
 - 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6조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11조는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안 제2조제6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은 조례 해석 및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는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 O 안 제14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관련법령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한 바, 본 조례에서도 교원치유지원 센터에 관한 규정을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이 혼 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해석 및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및 업무추진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